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6
----------	----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폐지사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고용직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용할 필요가 없어 조례의 계속 존치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관련법규

조 례 안 : 붙임

참고사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조례 제1181호, 1982. 2. 2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